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검진자료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요구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2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4.

(다) 회 부 일 : 2025. 3.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3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에 대하여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3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u>국민건강보험법</u> 」에 따라 설립된 <u>국민건강보험공단</u> (이하 “ <u>국민건강보험공단</u> ”이라 한다) 및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 (이하 “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 ”이라 한다), <u>통계청</u> , 「 <u>통계법</u>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u>

③・④ (생략)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 의료기관의 장, 「<u>국민건강보험법</u>」에 따라 설립된 <u>국민건강보험공단</u>(이하 “<u>국민건강보험공단</u>”이라 한다) 및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이하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u>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 ----- ----- ----- -----<u>국민건강보험공단</u> 및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2.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상 ‘검진자료’(제3조제4호)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진자료는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등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상 검진자료 활용 용도 >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검진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2.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3.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의 평가 및 지침 개발
5.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기관 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국민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법령상 검진자료를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 현행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검진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기도 함.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생략)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현행법령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사회적 필요성, 국민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 7. (생략)

②·③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③ (생략)

□ 그 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법(제22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 규정에 ‘제18조에 따른 검진 자료의 활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음.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고로 현행법에서 국가건강검진(제3조제3호)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등을 의미함.

- | |
|---|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진자료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다른 조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있으므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이에 추가하되, 건강검진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 외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암 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안의 조문은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안이유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제4항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¹⁾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사회적 필요성, 국민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

통계청	· 개정안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에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타 기관 자료 연계 시 개인식별 우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의 주 목적인 ‘사회집단별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를 산출해 왔으며, 요청 시 적극 제공하였음. · 신설조항 없이도 법안 발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안을 개정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해당 법안 발의 내용에는 공단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바, 국민 상당수의 광범위한 민감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의사협회	·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대상이 되는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 관련 법인·단체 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국민건강검진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법적 이슈 발생 우려 · 이미 현행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문 의 처

02)6788-550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④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및 통계의 작성이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